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

제정 2017. 9. 12. 개정 2018. 7. 11. 개정 2019. 10. 7.

제1조 (명칭) 명칭은 "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"(이하 "운영규정"이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건축법 제1조 목적에 규정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동법 제25조,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위법·부실공사를 예방하고, 공사감리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공공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비롯한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적용대상) ① 대구광역시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(이하"법"이라 한다.)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.) 제19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 〈개정 2019.10.7.〉

- 1.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
- 2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
- 3.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
- 4. 건축사 본인·배우자 또는 소속법인 소유 건축물
- 5. 신고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허가 건축물로 변경(법 제16조 및 영 제12조 에 의한 일괄처리대상범위 이내에 한함)된 경우
- 6.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
- 7. 정부, 조합, 공사, 교육기관 등의 기관과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건축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및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건축물
- ② 제1항 외의 예외 규정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9.10.7.>

제4조 (공사감리자의 자격) 공사감리자는 대구광역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한 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"협회"라 한다.) 회원으로 한다. 제5조 (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구성) ① 회원은 협회 회칙(이하 '회칙'이라 한다.)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- ② 회장은 공사감리자 구성을 회원 중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 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- 1. 지정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
- 2. 협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중인 회원
- ④ 제3항의 공사감리자 구성에서 제외된 회원인 경우라도 공사감리자 지정 등은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설계자는 설계계약 시 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본 규정에 대한 설명 및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자간의 감리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②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의 선임신청에 의해 회장이 지정한다. 다만,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공사감리자 선임신청을 위임한 경우 설계자가 선임신청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절차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 (공사감리자의 지정제외 신청 등) ① 공사감리자로 등록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 (공사감리자의 지정제한) ① 회장은 제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등록 및 구성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휴업신고를 하고 그 기간 중에 있는 회원
- 2.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회원
- 3. 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회원
- 4. 협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중인 회원
- 5. 공사감리를 지정받고 운영세칙에 따른 공사감리운영회비 입금시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공사감리자

제9조 (감리대가 및 계약 등) ① 감리대가 기준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른다.

- ②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건축주와 협의된 금액으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며 방법 및 절차 등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0조 (공사감리자의 업무) ① 제6조에 의거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건축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.) 별지 제13호 서식인 착공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감리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.
- ② 공사감리자는 감리진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검사 신청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운영회비 등) ① 회장은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회비 징수 및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.
- ② 공사감리자는 제9조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운영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회비는 협회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 및 절차 등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공사감리자의 운영회비 납부 시기는 운영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12조 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사항은 협회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3조 (위원회 업무) ① 위원회는 회칙 및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3조(적용대상)에 관한 사항 심의
- 2. 제5조(공사감리자 등록 및 구성)에 관한 사항 심의
- 3. 제6조(공사감리자 지정 등)에 관한 사항 심의
- 4. 제10조(공사감리자의 업무)에 관한 사항 심의
- 5. 제14조(규정위반에 대한 조치)에 관한 사항 심의
- 6. 제15조(분쟁의 조정)에 관한 사항 심의
- 7. 기타 공사감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장이 위원회에 의뢰한 사항 심의

- ② 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- ⑦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 심의 시 현장 조사 및 설계자·공사감리자의 출석을 요 청 할 수 있다.

제14조 (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등) ① 회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칙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절차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기타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조치 등은 운영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5조 (분쟁의 조정) ① 공사감리자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분쟁의 조정 방법 및 절차는 운영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6조 (감리대가의 지급) ①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 신고 전 및 사용승인 신청 전에 감리대가를 공사감리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공사감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의 감리대가 지급 방법 등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7조 (운영규정의 개정)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8조 (회계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,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하되, 건축공사감리위원회에서 정산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9조 (유권해석) ① 이 규정 운영상 필요한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20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

	()	<2016.9.12.	>	
제1조(시행일)	이 규정은 2017. 9. 2	25.이후 건축착공	신청된 건축물부터	시행한디
	()	<2018.7.11.	>	
제1 ()	l 규정은 2017. 9. 25	5.		
	()	<2019.10.7.	>	
제1 ()	│ 규정은 2 019. 11. 1	1.		

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.